

제206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
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심사보고서**



2017. 3. 10.

**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**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314호
----------	---------

2017. 3. 10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7.01.06
- 나. 회부일자 : 2017.03.02
- 다. 상정일자 : 2017.03.06

2. 제안설명

- 가. 제안설명자 : 안문환 의원
- 나. 제안(제정)이유

광진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‘토론회 등’ 을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구민의견 청취행위로 정의하고, 『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』 제55조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함(안 제2조).
-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 (안 제3조).
-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함 (안 제4조).
-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으로 하고,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함(안 제5조).

-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『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』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2017.1.11 ~ 2017.1.17 (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심경석)

- 의안번호 제1314호 『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은 2017년 1월 6일 안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- 이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.
- 조례(안)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,
 - 안 제4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부서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- 안 제7조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,

-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발표자, 토론자, 자료제출자,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**종합 검토의견으로**

- 본 조례안은 광진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회, 세미나 등을 통해 구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수립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9조에서 토론회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향후 운영 과정에서 특정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